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6-94호

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

근로기준법 제13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(자진납부고지서 포함)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1. 18.

서 울 서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

1. 건　　명: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　　거: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1호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성 명)	대표자 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공시송달 사유
홍*이층집 이*윤	90.0*.2*.	서울 마포구 서교동 (이하 생략)	·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·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	·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· 과태료 자진납부고지	동 서류를 송달('26.11.13.)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아니함

4. 공 고 기 간: 2026. 11. 18. ~ 2026. 12. 02.(15일간)
5. 문　　의: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2과 백세현 감독관(☎ 02-2077-6164)